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가목 중 “5억원”을 “1억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의3제4항제5호 본문 중 “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”를 “안전 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”로 한다.

제7조의3제8항 중 “경우(법 제26조 또는 「축산법」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)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7조의5제5항 중 “자가”를 “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한 결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의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의6제6항 중 “해당 조사·평가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그”를 “다음 연도의”로 한다.

제7조의8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

설한다.

6. 제7조의3제2항의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
별표 2의3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
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2의3 제2호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발급한 경우	법 제9조의6 제1항제4호	지정취소				
--	-------------------	------	--	--	--	--

별표 11의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
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14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,
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10호 중 “제5호 또는 제8호”
를 “제5호, 제8호 또는 제9호”로 한다.

8. 제7조의3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나 그 러하지 않은 경우	법 제9조의4제8호	시정명령
---	------------	------

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기간란의 “60일”을 “40일”로 하고, “120일”을 “6
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4서식 처리기간란의 “인증: 120일”을 “인증: 40일”로 하고,

“인증연장: 120일”을 “인증연장: 60일”로 하며, 같은 서식 목록 중 “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”를 “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제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제1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·운용 등) ①·② (생략)	제7조(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·운용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9조제3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.	③ ----- ----- -----.
1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<u>5억원</u> 이상인 영업자	가. ----- ----- ----- <u>1억원</u> -----
나. (생략)	나. (현행과 같음)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3(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) ① ~ ③ (생략)	제7조의3(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(이하 “통합인증”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(HACCP) 인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
작업장·업소·농장(통합인증을
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
작업장·업소·농장 중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
함한다)에 대한 제1항 각 호의
구분에 따른 서류. 다만, 기존에
안전관리인증작업장·안전관리
인증업소·안전관리인증농장으
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·업소·
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
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⑤ ~ ⑦ (생략)

⑧ 법 제9조제6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”란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·안전관리인증업소·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(이하 “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”이라 한다)로 인증받은 사항(축산물의 유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안전관리인증기
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

형, 가축의 종류 및 안전관리인증
 작업장등의 소재지만 해당한다)
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
경우(법 제26조 또는 「축산법」
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
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
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
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)
 를 말하며,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
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
 변경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
 서를 포함한다)에 변경사항을 증
 명할 수 있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
 함한다)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
 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⑨·⑩ (생 략)

제7조의5(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
 청 등) ① ~ ④ (생 략)

⑤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
 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
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
 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
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
 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·
 업소·농장(HACCP) 인증서를
 발급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경우

-.

⑨·⑩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5(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
 청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자
 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
 조사를 한 결과

. 다만, 「가축전

⑥ (생략)

제7조의6(조사·평가의 방법 등) ①
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판
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
조사·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
조사의 방법으로 한다. <단서 신
설>

② ~ ⑤ (생략)

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·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·평가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그 조사·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.

⑦ (생략)

제7조의8(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
인증취소 등) ① 법 제9조의4제8
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경

염병 예방법」 제19조에 따라 이
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
사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실
시할 수 있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6(조사·평가의 방법 등) ①

-----. 다만, 「가축
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에 따라
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
조사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
실시할 수 있다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_____

다음 연도의 _____

_____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8(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
인증취소 등) ① -----

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6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7조의3제2항의 단서에 따른
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